

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· 납부

7.1부터 7.25까지는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기간입니다. 이번 호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· 납부와 관련된 사항 및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□ 부가가치세 신고 · 납부

-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·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.

과세기간	과세대상기간	신고납부기간	신고대상자
제1기 1.1~6.30	예정신고 7.1~6.30	1.1~3.31 7.1~7.25	법인·개인사업자 법인·개인사업자
제2기 7.1~12.31	예정신고 7.1~12.31	7.1~9.30 10.1~10.25 다음해 1.1~1.25	법인·개인사업자 법인·개인사업자
	확정신고		

※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,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

- 개인사업자 중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신규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, 사업부진자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
□ 부가가치세 신고 편의를 위한 국세청 인터넷서비스

- 전자신고 서비스
 - 2003. 1월부터는 인터넷에 의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가 가능하므로 세무서

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.

- 전자신고를 위한 접속요령

- 「국세청 홈페이지(nts.go.kr)」의 「홈택스서비스」를 클릭하고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
【홈택스서비스의 이용절차】

- ▶ 「홈택스서비스의 접속에 필요한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는 한번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용자번호(ID)와 비밀번호를 지정 받아야 합니다.

(세무서 방문시 준비물)

- 본인 신청시 : 신분증, 도장
- 대리인신청시 : 위임장, 임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,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
- * 세무관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"인터넷국세서비스 신규/변경 이용신청서"를 작성 · 제출

- ▶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이미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 발급 가능

○ 부가가치세 신고요령과 신고서식의 조회 서비스

- 「국세청 홈페이지」 - 「세무정보」 - 「신고서 작성요령」 - 「부가가치세」를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자세한 신고요령과 신고서 등 필요한 서식을 down 받아 활용 할 수 있습니다.

○ 예정고지세액의 조회 서비스(7. 10~7. 25 제공)

- 2003. 1기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「국세청 홈페이지」 초기화면의 「궁금하세요」에서 예정고지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○ 정상사업자(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사업자) 여부 조회 서비스

- 「국세청 홈페이지」 초기화면의 「궁금하세요」에서 「사업자 과세유형 · 휴폐업」을 클릭 후, 본인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□ 기한내 신고 ·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

가 부과됩니다

- 신고불성실 가산세 :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는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(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미달한 납부세액)의 10%

- 납부불성실 가산세 : 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

납부불성실 가산세 = 무납부 · 과소납부세액 × 0.03% × 경과일수
⇒ 경과일수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

-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(간이과세자 제외) : 매출(매입)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등 : 해당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 1%, 법인 2%

□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유의사항

- 매입세금계산서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증빙자료입니다.

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는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.

-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, 성명 또는 명칭

· 실제 물건을 판매하는 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동일한지, 정상적으로 사업증인 일반과세자인지 확인

-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

·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

-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

- 작성연월일

·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자와 일치여부 확인

- 위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.

자료제공 및 문의

국세청 납세홍보과(02-397-1564)

E-mail : ho25400@nts.go.kr